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[별지 제7호서식] <개정 2024. 8. 7.>

실증특례 변경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시	

신청인	회사명(성명)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 ※ 사업자(법인)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	
	주소		
	대표자명	전화번호	전자우편
지역혁신 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 산업등	명칭		
	유형	[ ] 서비스 [ ] 제품 [ ] 서비스와 제품 융합 [ ] 기타	
	주요 내용		
기존 실증특례 확인 내용	확인번호	유효기간	
	실증특례 대상 법령		
	지역		
	기간		
	규모		
	조건 ※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제86조제4항 후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안전성 등의 확보를 위해 붙인 조건		
변경 사유	주요 내용		

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」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실증특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성명 (서명 또는 인)

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실증특례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1부 2. 실증특례 변경 사유서 및 관련 증명자료 1부 3. 책임보험이나 공제의 유효기간 변경계획서 또는 손해배상 변경계획서 1부(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) 4. 실증특례확인서 사본 1부 5. 그 밖에 실증특례 변경에 필요한 사항 1부

처리 절차

신청서 작성	➔	접수 및 신청	➔	접수 및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	➔	관계 행정기관 검토·협의	➔	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·의결	➔	실증특례 변경 여부 통보 (실증특례확인서 발급)
신청인		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		중소벤처기업부장관		관계 중앙행정기관 /중소벤처기업부장관		규제자유특구위원회		중소벤처기업부장관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